
2025. 12. 01

수 신 : 수신처 참조

발 신 : 유족회 혁신을 위한 회원 모임 대표 강 원

제 목 : 회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 함

1. 사 유

: 첨부 '별지' 에 상세하게 기재하였음

2. 참 고

가. 회원들의 총정어린 번민과 고뇌에 찬 속고의 결과이므로 이 요구가 즉각 수용되리라 믿습니다.

혹여 이 고뇌에 찬 회원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 (1) 5.18관련 제 단체 및 외부 민주시민과 연대 활동 전개
- (2) 정부 기관 및 각 언론에 직접호소
- (3) 각 혐의점에 대한 의율(擬律) 절차 진행 등

나. 요청사항

사무총장, 총무국장, 홈페이지 담당께서는 전체 회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유족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이용/회원의 권리

첨부 : 별지(사실관계 및 사퇴의 필연성 기재/10p)

[수신처] : 유족회 전체 회원(회장 및 임원은 필수 수신자)

[첨부] **비리세력과 손잡고, 내란세력과 손잡아,
5.18정신을 훼손한 양재혁은 사퇴해야!**

□ 개 요

-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양재혁에 대해, 유족회 지부의 비리 및 공법단체 운영 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회원들은 사퇴를 요구한다.

- 회장 양재혁은 전남 및 서울지부의 근로기준법 위배 등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서 이를 축소 · 은폐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연합뉴스 등 각 언론에서 유족회에 대한 비판적 보도로 유족회원 및 오월 영령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 지부장이 국가보조금 법인카드를 중앙회 로비 · 접대 의심이 되는 9.28일과 29일에 132만여 원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실은 해당 은행의 채권추심 과정에 서 밝혀졌고, 직무유기를 한 양 회장은 이를 축소하고자 했다.

- 특히 양 회장은, 독재 정권으로 회귀하고자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획책한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치소 찾아가 면회”하고(10.17), “우리가 황교안이다”(11.12) 라며 비상계엄을 지지하고 내란을 지속 선동하는 반민주 인사 황교안과 손잡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회동하였다.

- 양 회장의 행위는, 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공법단체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것이다. 특히 유족회 이사회와 임직원들 그리고 5.18관련 단체와 광주시민 모두가 내란동조세력의 ‘국립5.18묘지 참배’를 반대했음에도, 장동혁 대표와 회동 후에 양재혁은, “누구도 5.18 참배 막아선 안 된다”는 망언도 하여 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였다.

- 작금의 양 회장 양태는 정치적 행위로서 공법단체장의 직위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회원들은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다.

□ 사실관계

1. 유족회 일부 지부의 비리 : 임금착취, 근로기준법 위배 등

1-1. 비리 제보 접수 경위

- 2025.9.20경에 서울지부 사무국장의 주선으로 9.25일에 A씨와 첫 면담하며 1차 비리 제보를 접수받았고,
- 9.27. 피해자의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과 추가 비위를 청취. 확보하였으며,
- 9.28. 피해자가 본인 주거지로 방문하여 부가적 설명과 향후 처리 방안을 논의하였고, 제보자의 피해 사실확인서를 정리하고 확인 서명을 했다.

1-2. A씨의 ‘(피해) 사실확인서’ 요약

- A씨는 2025.6 ~ 8월까지 서울지부 사무국장으로 통보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6월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며,
- 지부장(김준기)의 요구로 급여의 약 50%를 반환하였고(7.1일에 금790,000원 계좌 송금, 8.4일에 금1,000,000원을 지부장에게 현금 전달함)
- 지부장은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독점 보관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임금 50%만 지급하도록 되어있다’면서 급여 50% 반환을 지속 요구함.

(→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과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 위의 행위는 강요 · 공갈 · 업무상 횡령 가능성이 있음.

1-3. 민원 제기 경과

: 2025.9.29.(09:30)에 상기의 피해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국가보훈부에도 공익 신고(민원)를 하였음.

1-4. 중앙회의 은폐 시도 등

- 중앙회는 제보 내용을 축소 · 은폐하려 하였고, 양 회장은 김준기에게 “보훈부에 먼저 민원을 제기하여 공익신고 내용 90%가 허위라고 주장하라”고 요구.
- 근로기준법 위배 등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위협과 보복을 시도 하였으며,
- 09. 29일 16시에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일부 임직원들이 축소 · 은폐에 적극 가담하였는데, 이들 모두는 국가보조금 법인카드로 접대 의혹을 받는 자들임.

1-5. 국가보훈부 특별감사 및 중앙회 징계위 개최에 수동적 태도

- 국가보훈부 공익신고와 10.21에 각 언론매체에서 비위 사실 보도가 있었고
- 보훈부 특별감사(10.20.~11.7)가 실시되었으며
- 양 회장은 공익신고자를 고발하겠다고 공개 위협도 하였다.
- 언론 보도 직후에 사무총장을 내부 제보자로 지목하여 직무배제(10.22) 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부의 권고(11.12)를 받고서, 11.17일에야 사무총장의 직무배제를 철회함.
- 사무총장 직무배제는 근거 없는 부당행위로 철회가 아니라, 취소가 마땅하고 사과했어야 한다.

(징계위 개최)

- 양 회장은 마지못해 서울지부장을 중앙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계위는 해당자를 ‘회원 자격정지 16개월’ 의 징계 처분을 함(2025.11.01.자 ?)

1-6. 허위사실 유포 방지

- 양 회장과 일부 임직원은 “징계가 과도하다” 며, 피징계자(김준기)를 두둔하였고, 이에 고무된 김준기는 SNS에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유족회와 개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관련 이사회 자료 참조)
- 김준기가 허위사실을 SNS 여러 곳에 지속 유포하며 단체 및 회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으나, 이를 인지하고 있는 양 회장은 수수방관하였음.

2. 업무상 횡령 및 지방보조금법 위반 소지

2-1.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 서울시 금고 대행, 신한은행이 국가보조금 카드 연체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하자 뒷 늦게(11월) 부정을 인지함 (→ 양 회장의 직무유기)
- 일요일(2025.9.28.) 오후에 공용차량을 이용해 목포시(전남지부 소재)를 방문하고,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저녁 식대 및 모텔 숙박비를 결제하였고,
- 9.29(월)에는 광주광역시 소재의 음식점과 마트에서 법인카드가 결제됨.
- 국가보조금 법인카드 사용은, ‘긴급 이사회 개최 前, 만 하루 동안 로비 청탁이 의심되는 임직원 거주지 인근에서 132만여 원이 결제’되었음.

☆ 추석 때 **‘5.18묘지 제사상 비용’**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명을 하고 있는데, 혹여 입증자료 소멸을 기대하며 시간 끌기(?)

* 국가보조금 및 법인카드의 목적 외 사용은, 보조금법 제40조 및 형법의 업무상 횡령 의심이 되며, 공법단체는 공공기관 성격으로 의율(擬律)된 판례가 있음.

2-2. 로비 · 청탁 의심 정황

- 09.29일 오후 4시에 개최되는 긴급 이사회 직전 · 직후에 목포와 광주광역시 소재의 로비 · 청탁 의심 대상자(임직원)의 거주지 인근 지역에서 다액의 법인카드가 결제되었고,

- 의심혐의 해당 임직원들이 김준기의 징계 반대에 적극 나선점을 고려하면, 부정청탁 등의 위반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데, 이는 배임수증재죄 및 뇌물죄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사 의뢰가 필요해 보임.

* 국가보조금으로 운용되는 공법단체는 공정기능 수행으로 정부기관 성격임.

- 이사회 개최 당일(09.29) 양 회장과 김준기가 사전 조율 및 만남 정황이 있다는 증언 등을 종합하면, 김준기의 로비 의심은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 함.

3. 회장 양재혁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3-1. 전남지부장의 근로기준법 등 위배에 대한 방치

- 직원채용 권한이 없는 전남지부장이 사무국장을 임의 채용하여 근로기준법과 정관을 위배하였으며,

- 또한 사무국장의 친딸을 공개경쟁 채용절차 없이 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한 행위 역시 근로기준법 위배인데 양 회장은 이를 소홀히 취급하였고, 이 사실을 확인 취재하는 언론에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사건을 확대한 책임도 있음.

(→ 회장의 관리 감독 및 작위의무 위반).

3-2. 서울지부 비리 및 비위 축소 · 은폐 시도

- 2025.09.29일 비리 민원 접수 직후에 사실확인을 미루고, 내부의 수습 방안 (문서로 작성)도 무시하였음 (→ 회장 미결제 서류 존재함)
- 2025.10.21.일 연합뉴스 등 각 언론에 유족회의 비위 사실이 보도되자, 연합뉴스 등에 허위 과장 보도라며 언론중재위 제소 운운하고, 민원 제보자를 고발하겠다고 공개적인 위협과 사실 은폐를 시도하였고,
- 이후에도 진실 파악 및 비위 대책 수립에 소홀히 하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지속하였음.
- 국가보훈부의 민원(공익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도 양재혁은 “서울지부 내부 갈등으로 벌어진 근거 없는 민원”이라며 허위 답변을 계속하였고,
- 보훈부에서 “지부장의 사무국장 임금착취 등 비리 발생과 과거의 내부 갈등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질책을 받는 등 축소 은폐 시도를 지속하였음.

3-3.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민원(공익신고)인에 대하여 “고발하겠다”는 공개 위협과 사무총장 직무배제 조치로 보복을 실시함. (→ 직권남용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위반 소지)

3-4. 반복된 축소 · 은폐 및 작위의무 방기

- 국가보훈부의 확인에도 계속 거짓 해명하였고
- 가짜회원 색출 민원도 폐기하며 작위의무를 방기하였다. (→ 직무유기)

3-5. 내란동조세력 장동혁과의 비공개 회동

- 유족회 이사회 및 5.18관련 4단체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회동을 강행 함

- 특정 정당의 대표와 비공개 개별 회동은 정관상 금지된 정치 행위이며,
- 이러한 양 회장의 이중적 태도가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촉발하여 11.16일에 또다시 언론에 보도되면서 유족회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함.

4. 비리 지부장과 결탁하고 내란동조세력 장동혁과 손잡아....

4-1. 지부 비리 및 비위 의혹

- 양 회장은 지부장들의 반복된 비리 및 비위를 계속 비호하였고,
- 휴일에 공용차량을 사용하고 차량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국고손실 · 업무상 횡령 · 정관 위배 가능성도 있음

4-2. 장동혁 대표와 비공개 회동

- 2025.11.6. 장동혁 대표와 병상 회동은 명백히 정관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단체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것임.
- 내란 동조세력과 부적절한 접촉은 이사회 결의를 무시하였고, 5.18관련 4단체 및 민주시민과 유족회원들의 반대에도 강행한 것으로서, 윤리적 ·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
- 특히 장동혁은 구치소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찾아가 면회하였고, “우리가 황교안이다”며 내란 및 반민주 세력임을 거듭 표명했음에도 비공개 회동을 하고, 언론에 “누구도 5.18 참배 막아선 안 된다”는 망언을 하였다.

4-3. 반성없는 변명 : 11.7자 매일경제, 11.16자 연합뉴스 보도가 왜곡?

- 내란동조세력과 회동(11.6)한 사실에 대해 내부 비판이 확산되자, 11.27일에는 대의원들에게, “의혹과 추정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 “사실과 다른 왜곡된 언론보도들은 이미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해 정정보도 절차 중”, “선동을 위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자가 누구지요?” 등 발언을 하고 있는데,

① 언론 중재위원회 제소는 전남지부 비위 건에 대한 것이고, 장동혁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며

② 11.7일 매일경제 기사의 후단을 보면, “~ 특히 양 회장과 의 간담회는 6일 오후 1시 30분에 5.18민주묘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양 회장이 최근 낙상사고로 ~ 취소됐다. 병원 측에서 외출을 금지했기 때문이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③ 위의 보도는 양 회장이 사전에 장동혁과 간담회를 약속한 것이며, 내심은 적극적으로 회동을 계획했다는 방증인데, 대의원들에게는 거짓 해명을 하는 것으로 보임.

5. 결 어

상기 일련의 비리와 비위들은 양 회장의 단순한 ‘관리 부실이나 일시적 착오’가 아닌, 공법단체의 대표자로서 요구되는 공적 책임과 법적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단체의 기능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태이다.

가. 비리 지부장 보호는 명백한 작위의무 위반이며, 법률상 제재 대상

(1) 공법단체 회장은 공정 · 투명한 단체운영 의무, 회원 보호 의무, 보조금 적정 집행 의무, 비위 발생 시 즉각 조치 의무를 가진다.

(2) 그러나 양 회장은 비리와 비위를 축소하고 비호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지방 보조금법 제40조 위반, 형법상 배임수증재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 방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보복·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다수의 비위가 반복되었다.

(3) 이는 공법단체 운영의 최후 의무자인 회장이 스스로 공법단체를 법적 위험과 사회적 불신으로 끌어간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이다.

(4) 상기 제3항에서 제시된 양 회장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사례는 모두 문서·기록·증언 등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으로서,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있다.

나. 내란동조세력과 비공개 회동은 공법단체 대표에게 금지된 정치 행위

(1) 우리 정관은 명시적으로 “정치적 목적의 접촉·발언·행사 참여”를 금지하며, 그 이유는 공법단체가 국가 공익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양 회장은 병월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강한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 정치세력과 회동하며 5·18 정신과 배치되는 발언까지 하였다.

(3) 이는 단체의 중립성과 명예, 유족의 신뢰를 전면적으로 파괴한 행위이다.

(4) 5·18 희생자와 유가족의 이름을 이용해 정치 행위를 한 양태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다. 소 결 : 유족회 명예 회복을 위한 단호한 행동 필요!

(1) 회장 양재혁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사퇴는 단체의 통합 및 신뢰 회복을 위해 필수적 사항이며, 공법단체의 도덕성과 공적 책임 수행을 위한 조치이다.

(2) 내란동조세력과의 비공개 회동에 대해 즉시 사과해야 한다.

정관 위배 및 정치 행위 금지 위반은 공법단체 존립 근거 자체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적 행위이다.

(3) 회원 및 시민사회에 동참을 요청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5·18정신의 명예와 역사적 진실을 지키는 일이다. 따라서 민주시민, 제 단체 및 언론과 연계하여 진행할 것이다.

(4)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조치를 즉시 실행할 것이다.

- ① 법인카드 부정사용(9.28~29)관련 혐의자 전원은 의율(擬律)될 것임
- ② 양 회장의 직무유기 · 직권남용 · 정관 위배에 대한 민형사 고발
→ (준비 중인)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전자소송) 즉시 진행
- ③ 공익신고자 보호법, 근로기준법 위배 등에 대한 권익위와 수사기관에 절차 진행을 즉각 요청할 것이다.

(5) 5·18정신은 “**불의에 침묵하지 말라**”는 명령이다!

비리와 부정에 물든 세력을 그대로 두는 것은 희생하신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다. 유족회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내란세력과 동조하는 희생분자를 가려내는 일은, 공법단체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며 5·18정신을 실천하는 역사적 사명이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할 과제이며 그것은 곧 정의이다. 끝.

(감사합니다.)

2025.12.01

* 작성자 : **강 원**(유족회 혁신을 위한 회원 모임 대표)